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의견표명]

□ 민원 제목 : ○○동 △△아파트 공사현장 침수피해 해결요청

□ 신청 원인

△△ 아파트 신축 공사가 진행되면서 기존 국가 소유의 도로가 아파트 부지로 편입되어 공사장 도로로 통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7, 8월 두 차례 호우로 주변 도로와 사무실, 공장이 침수되어 피해발생, 우수 계획과 변경 요청 및 피해보상 요청

□ 피신청인 등의 주장

○○동 △△△-□번지 도로는 ○○종합건설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주변이며 주택 및 각종 상가 등이 있는 생활도로로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공용도로인데, 아파트 건설로 이 도로가 공사장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7, 8월의 집중호우로 인해 주변 도로와 사무실 및 공장이 침수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 해당 아파트 공사 현장 측은 천재지변에 의한 침수라고 주장함

이로 인해 공사 현장과 주변의 우수 유입이 더욱 늘어나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고, 또한 건축 중인 해당 아파트의 지상고가 계획보다 1M 이상 높아져 상대적으로 주변 상권들이 저지대로 변하였고 이로 인해 침수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사실관계

1) 대상 도로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면(m)	현 이용상황	비고
○○동	△△△-□	도로	농림축산식품부	581	도로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3) 사실 판단

- 사업지 내 우수처리계획은 광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50년 빈도 강우를 기준으로 수립됨.
- 맨홀 MB05-MB06, MB13-MB14 방류계획으로 우수처리가 분산되어 있으며, 사업구역 내 유역(6.075ha), 외부 유역(0.711ha), 민원 발생지 인근 농지유역(1.336ha)을 포함하여 수리계산 결과 30% 이상의 여유 유량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예기치 못한 기후 변화로 인해 기존 복개도로에서 유수가 추가 유입될 경우 별도의 조치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됨.
- 도로 계획고는 인접 대지 지반고, 아파트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하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보행 및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규정에 맞춰야 함.

□ 관계법령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9조
- 「도로법」 제25조 ~ 제30조

□ 판단 및 결론

- 예상치 못한 폭우로 우수관이 토사 등으로 막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가 확인됨. 원활한 배수 처리를 위해 하수관거 연결부(연결관 포함)는 각을 충분히 완화하여 설치하고, 외부 유역에서 사업 대상지로 유입되는 모든 우수량을 포함해 최종 방류 지점까지 배수 이상 여부를 검토한 뒤 추가 대책을 제시하고 별도 협의가 필요함.
- 소관부서에서는 법령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우수계획 변경)를 인접 도로와의 연결성, 보행 및 차량 소통, 배수 계획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대로 진행하여 민원 해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의견표명)

□ 민원 제목 : ○○동 △△아파트 인근 도로개설 관련

□ 신청 원인

○○동 △△아파트 뒤편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차량 주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시선유도봉 설치 요청 및 기 설치된 옹벽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

□ 피신청인 등의 주장

○○동 △△ 아파트 뒤편 도로개설로 불법 주정차가 발생해 저층 세대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노면표시 및 시선유도봉 설치를 요청함. 또한 비탈면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기존 옹벽의 안전성에도 문제

□ 사실관계

1) 대상도로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m ²)	현 이용상황	비고
○○동	△△△-□□	도로	광주광역시 북구	643	도로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3) 사실판단

- 미개통된 도로의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아파트 저층 세대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차량 주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차선, 노면표시, 유도봉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비탈면을 천막으로 임시 방편으로 조치한 것과 관련하여 석축 구간은 마감 처리를 재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비탈면을 따라 흘러내리는 토사 역시 공사 재개 시 보강을 통해 도로로 흘러내리는 토사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석축의 안전성 관련하여 소관부서 건설과 직원이 확인한 결과 석축의 시공 및 안전 점검을 하여 석축 시공은 양호한 상태로 확인되었음.
- 처음 공사계획과 실제 공사가 다르게 이루어진 사유에 대해서는 ①지반조사 결과 암반 존재로 인해 과다공사비 및 소음, 진동피해 발생 우려, ②인접지 지반고에 따른 토사 비탈면 고려, ③인접지 도로 계획고 상향 민원, ④아파트 입주자의 도로 계획고 하향 민원 등 여러 현장 여건 및 민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확인되었음.

□ 관계법령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9조
- 「도로법」 제25조 ~ 제30조

□ 판단 및 결론

- 현장 점검을 통해 민원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개설 설계변경을 실시하였고 옹벽의 미설치 구간에 대하여 토사유실 등 예방을 위한 전석쌓기 반영하여 공사 진행하기로 함.
- 차량 주차로 인한 사생활 침해 의견을 반영하여 불법주정차 CCTV를 설치하고 시선 유도봉, 차선의 경우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하기로 함.
: 차선도색 백색실선 → 황색실선, 과속방지턱 0개소 → 2개소,
차선규제봉설치 0EA → 45EA